

卷之一 官職

俞 景 老

1. 緒 論

觀象監의 職制는 書雲觀志 卷之一의 第一篇 官職에 설명되어 있다. 이 官職篇은 처음에 위로부터 세칸을 비워서 緒論的으로 國初(朝鮮初)부터 世祖 때 書雲觀을 觀象監으로 改編했을 때까지의 變遷과 觀象監의 所屬과 任務를 기술했다. 本 論文에서는 便宜上 이 記述을 (1)로 표시한다.

다음에는 맨 윗칸부터 채워서 觀象監의 官職을 들고 註의 形式으로 各職의 內容을 詳細히 記述하고 있다. 이 部分이 이 編의 本文이라고 볼 수 있다. 本 論文에서는 이렇게 첫칸부터 내려 쓴 부분을 (2)로 표시한다.

그러나 이 (2)의 文章도 中間에 두번 끊어져서 3 部分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各部分의 뒤에 補充說明的인 記述이 있다. 이들은 위의 첫칸을 비워서 한칸을 내려서 써내려 갔다. 이 補充說明的인 部分을 本 論文에서는 (3)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2)의 本文이나 (3)의 補充文이나 다 3 部分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2)-1, (3)-2 의 식으로 表示하기로 한다.

書雲觀志의 記述을 理解하는 첫 條件은 그 文章을 正確히 解得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正確한 翻譯이 必須的이다. 그런 뜻에서 本 論文에서는 먼저 그 翻譯을 試圖하였고 本文의 註는 圈 또는 一로 筆者의 註는 譯者註 또는 ()로 表示하여 兩者를 區別하였다. 그 翻譯에는 또 理解를 돕기 위하여 欄外의 註를 붙이기로 했다. 翻譯의 臺本은 奎章閣 所藏本 圖書番號 56, 內別番號 1의 影印本을 썼다. 그러나 書雲觀志의 記述에는 오늘날 普通 쓰지 않는 투의 漢文用法이 많고 또 朝鮮時代에 썼던 古法典用語가 許多하게 들어 있어서 더구나 賤學한 筆者에게는 그 理解가 매우 곤란하였다. 多幸히 1979 年에 法制處에서 刊行한 趙國元 校閱의 古法典用語集과 1939 年에 朝鮮總督府 中樞院에서 刊行한 校註 大典會通의 欄上註와 1973 年에 百萬社가 出版한 李弘植 編, 「完璧 國史大事典」이 있어서 그 讀解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의 盧寧壽氏의 도움도 컸다.

翻譯에 主力한 本 論文에서는 그 번역에 뒤이어서 筆者의 약간의 解說을 붙여서 그 內容을 現代의 立場에서 補充하고 未詳의 점과 疑問나는 점은 일일이 (?)으로 표시하고 未備와 誤解는 後學의 더 깊은 穿鑿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끝으로 筆者의 이 官職篇에 대한 의견을 餘言으로 添加하여 結論으로 했다.

2. 翻譯

官 職

(1)

國初에 高麗의 制度를 따라 書雲觀을 設置하였다. 一圈 左傳에 「分至啓閉 必書雲物」이라고 있어서 書雲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一天文, 地理, 曆數, 占筮¹⁾, 測候²⁾, 刻漏³⁾ 등의 일을 管掌한다. 判事 2 員,

1) 方書에 의하여 吉凶을 占치는 것.

正 2 員, 副正 2 員, 丞 2 員, 兼丞 2 員, 注簿 2 員, 兼注簿 2 員, 掌漏 4 員, 視日⁴⁾ 4 員, 司曆⁵⁾ 4 員, 監候 4 員, 司辰 4 員이 있었다. 世宗 乙巳(1425)에 天文의 秘密을 禁漏⁶⁾를 맡는 사람에게 같이 공부시켜서는 안된다 하여 禁漏를 分置하고 定員을 天文 20 員, 禁漏 40 員으로 했다. 癸丑(1433)에 禮曹에서 奏하기를 中朝에서는 欽天監⁷⁾의 挈壺正⁸⁾이 禁漏를 兼掌하는 例가 있다고 하여 다시 禁漏를 天文에 合屬시켰다. 倭譯者註, 世祖 12 年 丙戌(1466)에 觀象監이라고 改稱하고 또 禁漏를 갈라놓고 다시 官制를 定했다. ○ 本監은 禮曹에 屬하고 稽制司⁹⁾가 天文漏刻을 管掌한다.

(2)-1

領事 1 員—領議政이 兼하도록 되어 있다(例謙).¹⁰⁾ 印信¹¹⁾이 있다.

提調 2 員—從二品 以上으로 兼任.

○ 議政으로서 政丞(相)이 되기 전부터 이미 提調를 兼했던 사람은 議政(政丞)이 되어도 그대로 그 職을 띤다.

堂上 無定員—材質과 功勞가 있는 陞資¹²⁾한 자로서 王이 啓請하여 任命한다. 正廟朝 때는 처음에 王께 아뢰 (啓) 것을 아래서 다시 請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일이 重複된다 하여 廢했다. 만약 人員이 적을 때는 術業¹³⁾이 있는 자를 抄錄에 올려서 啓한다(抄啓).¹⁴⁾

正 1 員—正三品, 印信이 있다. 長期間 在任하는 官職에 있는 사람(久任)¹⁵⁾이 兼職하게 되어 있다. 혹은 僉正을 付¹⁶⁾한다. 詳細한 것은 取才篇에 있다.

○ 전에는 副正 1 員 從三品이 있었으나 減했다.

僉正 1 員—從四品 奴婢를 管掌한다.

判官 2 員—從五品 褒貶을 管掌한다. ○ 예전에는 2 員이었으나 1 員은 軍職¹⁷⁾으로 바꾸었다.

主簿 1 員—從六品 祭享과 牒呈¹⁸⁾을 管掌한다. ○ 前에는 2 員이었으나 1 員을 軍職으로 바꾸었다.

直長 2 員—從七品 그 중 1 員은 祭享과 牒呈을 맡았다.

奉事 2 員—從八品 그 중 1 員은 星變의 牒呈을 맡았다.

副奉事 1 員—正九品 ○ 전에는 3 員이었는데 지금은 2 員이다.

參奉 2 員—從九品 ○ 전에는 3 員이 있었다. 지금은 2 員이다. ○ 以上の 遞兒¹⁹⁾는 兩都目²⁰⁾ 取才²¹⁾에 의하여

2) 天文 其他의 現象을 觀測하고 報告하는 일.

3) 漏時計에 의하여 時刻을 알리는 것.

4) 日變을 觀察하거나 日月食을 豫報하는 職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는 官員.

5) 曆書 編纂의 일을 맡은 官員.

6) 宮中の 漏刻을 맡는 것인데 여기서는 漏刻의 일을 管掌하는 것을 뜻한다.

7) 中國에서의 觀象監에 該當하는 官廳의 이름.

8) 欽天監員의 한 사람의 官職名. 漏刻의 일의 責任者. 本文의 表現이 이상하다.

9) 禮曹의 한 分掌事務處.

10) 官制에서 한 사람이 兼任하도록 되어 있는 職制

11) 信憑의 證據로 삼는 도장. 政府로부터 一定 官員에 주어서 職務에 쓰게 하는 것.

12) 堂上官의 資憲大夫(正二品)級에 오르는 것.

13) 學術 또는 技術

14) 抄錄하여 上奏하는 것. 즉 人材를 선발하여 王에게 奏하는 것.

15) 한 官職에 長期에 걸쳐 在任하는 자리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16) 어떤 職에 補佐하는 役으로 任命하는 것.

17) 兵曹 五衛에 딸린 上護軍, 大護軍, 護軍, 副護軍, 司直, 副司直, 司果, 副司果, 司正, 副司正, 司猛, 副司猛, 司勇, 副司勇 등 西班牙 벼슬의 通稱. 이러한 軍職의 官職을 가지고 觀象監의 業務에 從事하는 자리가 있었다.

18) 牒報의 일로서 禮典의 用公文式條에 따라 下司가 맡은 바 일의 狀況을 上司에게 報告하는 글.

19) 原錄遞兒職과 軍衛遞兒職이 있다. 前者는 現職을 떠난 文武官을 禮遇하여 계속 祿俸을 支給하는 벼슬자리이고 後者 軍衛遞兒職은 各 官衛에 定員은 적고 業務는 많아서 臨時로 增員한 사람을 各級 軍職에 붙여서 軍職의 祿俸을 받으면서 해당 官衛의 業務에 從事하게 하는 것.

採用되어 6개월의 勤務日數를 마친(計仕)²²⁾者로 任命하고 正 僉正 判官 主簿는 科擧 合格者(出身者)²³⁾로 任命한다.

天文學教授 1員—一從六品 聰敏의 考試를 管掌한다. 三曆官 中の 判官 以上으로서 골라서 任命한다. 議論하고 薦擧하는 일은 本學²⁴⁾의 堂上 東班正職²⁵⁾을 지낸 사람 兼教授의 긴 任期에 있는 者가 會圈²⁶⁾하여 多點者로 任命한다. 兩學科者²⁷⁾는 昭擬²⁸⁾을 許諾하지 않는다. 地理 命課에 登科하고 天文에 從事하는 者를 兩學科라고 한다. 英宗 辛卯(1771)에 처음으로 修述官을 候補者에 올렸다(通望).²⁹⁾ ○전에는 2員이었는데 그 중 1員은 文臣이 兼했다. 때때로 長官(領事?)이 自意로 推薦 任命(自辟)³⁰⁾하였으나 후에 고쳤다. 星變이 있으면 文臣으로서 名望이 있는 자를 골라서 臨時로 測候官으로 任命한다(勸差).³¹⁾ 이때는 定員이 없다.

地理學教授 1員—一印信을 갖는다. 地理學의 判官 以上에서 골라서 任命한다. 만약 薦擧에 오른 자가 있으면 天文學과 該學(地理學)의 任官이 會圈하여 任命한다. 正宗 辛亥(1791)에 實官 7員 중에서 推薦하여 議決 任命(擬差)³²⁾하는 것을 恒規로 정했다.

天文學訓導 1員—一正九品 本學의 教授와 같은 方法으로 推薦 任命한다.

地理學訓導 1員—一擬差方法은 역시 該當教授와 같다.

命課學訓導 1員—一該學의 主簿 以上으로서 골라 任命한다. 만약 推薦에 오른 자가 있으면 天文學 및 該學의 任員이 會圈으로서 任命한다. 正宗 辛亥(1791)에 비로소 識吉官 中 判官 以上으로써 任命하게 하였다. 本學의 例와 같다. ○전에는 2員이었는데 1員은 星經監印官으로 바꾸었다. ○諸學의 教授 訓導의 品秩³³⁾은 각각 같다. 聰敏의 考試도 역시 같다. 모두 30개월이면 交替한다.

兼教授 2員—一從六品 星變의 測候와 聰敏의 考試를 管掌한다. 그중 1員은 三曆官 中の 判官 以上으로 하고 1員은 識吉官에서 任命한다. 각각 滿 45개월을 勤務하면 轉勤한다.

遞兒教授 2員—1員은 天文學, 1員은 命課學이다. ○전에는 1員은 天文學과 禁漏官이 輪回³⁴⁾하였고 1員은 地理學과 命課學이 輪回 任命되었으나 正宗 乙巳(1785)에 天文 禁漏가 輪回하는 자리(窠)³⁵⁾를 天文學에 專屬시켰고 辛亥(1791)에 또 地理學 命課學이 輪回하는 자리를 고쳐서 命課學에 專屬하는 자리로 하여 30개월마다 서로 交替하게 하였다.

(3)-1

처음에 正德 丙寅(1506 燕山君 12年)에 司曆署로 改稱하고 令 1員, 主簿 直長 奉事 各 2員, 參奉 3員을 두었는데 中宗朝初에 이르러 모두 復舊하였다가 후에 副正 判官 主簿 參奉 命課學 訓導 各 1員, 副奉事 2員을 減하고 兼教授 5員을 增置했는데 그중의 1員은 天文學이고 4員은 閒散有衛者³⁶⁾로 任命하였다. 英宗 庚午(1750)에 閒散教授 4員을 罷하고 天文學 地理學

20) 6월과 12월 두차례씩 官吏의 移動을 行하는데 이때 取材로 사람을 뽑는 것.

21) 科擧 이외에 人材를 뽑기 위하여 특별 採用試驗을 實施하는 것.

22) 官吏의 勤務한 日數를 計算하는 것.

23) 科擧에 合格한 자 또는 合格하고 아직 出仕하지 않은 자.

24) 여기서는 天文學.

25) 文官의 實職으로 雜職이 아닌 正職을 말하는 것.

26) 詮衡하는 사람이 官員의 適任者를 고를 때 被選된 候補者의 이름 위에 圈點을 찍어서 그 점을 많이 얻은 자로 任命하는 制度.

27) 兩學科者: 地理, 命課에 登科하고 天文에 從仕하는 자.

28) 候補者를 놓고 議論하여 골라서 任命하는 것.

29) 一定 官職의 候補者로 決定되는 것.

30) 長官이 自意로 任命하는 것.

31) 臨時로 任命하는 것.

32) 議論하여 골라서 任命하는 것.

33) 品階

34) 둘러가며 職責을 바꾸는 것.

35) 官職의 자리(T.O.)

36) 實職에서 물러나 있는 技術과 學術이 있는 자.

命課學 禁漏學에 각각 1 자리(案)씩을 分屬시켰다. 壬午(1762)에 또 2員을 고쳐서 遞兒教授로 하고 轉任하지 못하게 하고, 1員은 舊制에 의하여 三曆官—判官 以上—으로 任命했고 1員은 天文學 禁漏官을 輪番으로 任命하고 1員은 地理學 命課學 閒散으로 輪差³⁷⁾했다. 正宗 辛丑(1781)에 閒散輪回의 자리를 없애서 天文 地理 命課 三學을 輪差하게 하고 天文學 禁漏官의 자리는 禁漏官과 晝員을 輪差하게 하였다. 辛亥(1791)에 天文, 地理, 命課의 輪回하는 자리를 고쳐서 命課學에 專屬시키고 45朔에 一遷하는 規則으로 고쳐서 天文學의 元來부터 屬해 있는 자리와 같게 했다. ○英廟朝에 閒散教授 4員을 없애고 各學에 分屬시키고 取才가 있으면 이내 差出케 했다. 王의 命을 받은 다음 해인 辛未(1751)에 相地官 金道興이 本業에 가장 精通했으므로 經筵의 자리에서 稟(筵稟)³⁸⁾하여 곧 任命하였다. 이로 인하여 各學의 取才가 한번의 試驗도 치르지 않고 이루어졌다. 領事가 有術者를 單獨으로 推薦해서 王의 裁可가 吏曹과 兵曹(東西銓)⁴⁰⁾에 내렸다. 天文學에는 司果를 붙이고 地理學, 命課學, 禁漏官에는 司勇을 붙였다. 任期를 채운 후에는 五經⁴¹⁾ 中の 1經, 四書⁴²⁾ 中の 1書를 吏曹에서 願을 들어서 試講⁴³⁾을 한다. 不을 맞으면 한번의 勤務 成績試驗(一考?)⁴⁴⁾을 削減하여 無效로 한다. 그 輪回하는 자리는 혹시 任期를 채우지 못하고 事故가 있으면 任期 滿了前에 다른 자리로 轉任(徑遞)시킨다.⁴⁵⁾ 즉 다시 그 學으로 任命했다. 여기에 이르러 天文 命課의 分屬시키는 자리로 정했고 이내 式이 되었다. 一仔細한 것은 아래의 取才篇에 있다. 一○肅宗 辛丑(1721) 一著者註, 즉 景宗一年—에 備局⁴⁶⁾의 回啓⁴⁷⁾에 따라서 天文學兼教授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參上⁴⁸⁾으로 하여 兼教授를 六品에 올리고(陞六)⁴⁹⁾ 任期가 滿了(箇滿)⁵⁰⁾된 閒散職인 자는 도로 보냈다. 그러나 이 자리는 參上이기는 하나 實際는 軍職이라 遞兒의 比가 아니다. 다만 車亮徵 等 數人은 전에 東班正職을 지냈다 해서 다시 教授로 했다.

(2)-2

司直 1員—日月食述者⁵¹⁾가 兼한다. 6개월마다 交替한다.

司果 無定員—1員은 天文學首堂⁵²⁾에 別付⁵³⁾되고 1員은 命課學의 擇日遞兒 三學의 有材勞者에게 特命으로 永付⁵⁴⁾된다. 자리는 定員이 없다.

司正 3員—1員은 天文에 賞으로 加한 것이다. 전에는 天文學의 有勞者에 別付했던 것인데 후에 本學의 堂上에 交代로 붙이는(遍付)⁵⁵⁾ 자리로 했었다. 지금은 輪回의 弊端을 없애기 위하여 本學 副堂에게 永屬시켰

37) 輪番으로 돌려가며 任命하는 것.

38) 大闕자리, 王陵자리 등의 地相을 보는 官員.

39) 筵席에서 王께 직접 稟奏하는 것.

40) 東銓(吏曹)과 西銓(兵曹)

41) 詩經, 書經, 易經, 禮記, 春秋.

42) 論語, 孟子, 中庸, 大學.

43) 講을 試驗한다. 또는 試驗하기 위한 講, 講은 배운데를 외우는 것.

44) 한번의 官員의 勤務成績의 試驗(評價).

45) 바로 交替하여 轉任시키는 것.

46) 備邊司

47) 王이 下問한 것을 再審하여 上奏하는 것.

48) 正三品에서 六品까지의 官員에 붙이는 呼稱.

49) 六品으로 昇進시키는 것.

50) 考滿, 任期가 滿了된 것.

51) 日月食의 豫報計算을 하는 자.

52) 한 官衙의 正三品 이상의 堂上官 中の 우두머리.

53) 別途로 붙이는 것(?)

54) 恒久的으로 붙이는 것(?)

55) 交代로 붙이는 것.

다. 2員은 東班을 바꾸어서 그대로 所屬시킨 것이다. 兩都目取才에서는 다만 天文學만을 취한다.

司猛 2員—1員은 東班을 바꾸어 만든 것이고(東班換作) 1員은, 天文習讀遞兒이다. 모두 司正의 東班換作과 같다. 다만 本學을 취하는 것이 예이다.

司勇 3員—1員은 天文習讀遞兒이다. 三學의 聰敏으로 講을 試驗해서 點數가 優秀한 자를 輪次的으로 任命한다. 1員은 看山⁵⁶⁾遞兒인데 地理學에서 教授나 訓導를 지냈던 자를 輪回시킨다. 1員은 和會遞兒⁵⁷⁾인데 地理學, 命課學에서 輪回한다. 地理學에서는 勤務日數의 計算制로 하고 命課學에서는 座目⁵⁸⁾에 따른다. 모두 三朔마다 交替한다. 正宗 辛亥(1791)에 和會司勇을 地理學에 專屬하는 자리로 하여 遞兒教授의 자리의 半(半策)의 代身으로 充當하였다.

(3)-2

예전에는 天文學習讀官 10員—從六品—이 있었다. 大典通編에는 天文習讀官이 官職에서 떠난 後에는 取才入格者를 叙用하게 했다. 本業에 精通한 자는 肆習官이라고 하여 그 業을 맡아 보게 했다. 前衛⁵⁹⁾은 無祿官⁶⁰⁾의 例에 의하여 叙用했었다고 했다. 지금은 모두 없애고 다만 遞兒자리 2개만이 있다. 또 달하기를 司果를 永付한다고 했으나 特別한 敎示 外에는 稟請할 수가 없다. 一東班換作이란 東班遞兒를 軍職者로 換作한다는 것을 減省해서 하는 말이다.

(2)-3

三曆官 30員—星曆의 推步⁶¹⁾를 管掌한다. ○처음에는 定員이 없었다. 英宗 辛酉(1741)에 定員을 30員으로 定하고 揀選課講之法⁶²⁾을 따르며 根據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해 壬戌(1742)에 5員을 增置하였다. 舊例로는 天文生과 科名이 있는 자를 混合해서 試驗하여 缺員을 메꾸어 任命했으나 丙戌(1766)에 비로소 推步官, 別選官 外에는 試驗에 應하지 못하게 하였다. 4년이 지난 庚寅(1770)에 修述官을 처음으로 두고 乙未(1775)에는 領監事 韓翼魯가 修述官을 直接 任命했다. 正宗 丁酉(1777)에 다시 前과 같이 混試하게 했다. 丁未(1787)에는 다만 修述官만을 취하여 填補하게 했고 辛亥(1791)에는 특별히 釐正을加해서 節目을 만들고 이어 三曆官과 修述官으로써 補闕하게 했다. 후에 兩等祿取才⁶²⁾의 例에 의하여 王의 決裁를 받았다. (啓下)⁶³⁾ 戊午(1798)에는 5員을 減하여 英宗朝의 原定員과 같이 했다.

諫吉官 7員—良吉의 選擇을 管掌한다. ○전에는 命課에 從事하는 자를 모두 日官이라고 해서 定員이 없었다. 正宗 辛亥(1791)에 定員을 7員으로 정하고 諫吉官이라고 命名했다. 또 修選官을 두고 大小의 選吉을 서로 融通해서 맡아 管掌하게 했다. 階級과 秩次는 自然 정해져 있었다. 처음으로 諫吉官에 缺員이 생기면 修選官 중에서 試驗을 보여서 골라서 陞進 任命했다. 修選官에 缺員이 있으면 該學의 前銜을 試驗을 거쳐서 새로 任命했다. 후에는 啓目⁶⁴⁾ 등의 일은 모두 三曆官 修述官의 例와 같이 했다.

修述官 6員—交食을 推步하는 일을 管掌한다. ○舊例에는 다만 日月食述者 1員만이 있었다. 三曆官이 輪番으로 交替했었다. 英宗 辛酉(1741)에 交食籌試⁶⁵⁾를 써서 點數가 優秀한 자를 취하여 任命했다. 庚寅(1770)에 官職을 設置하고 定員을 마련하여 三曆官과 天文學科前銜을 각각 6인씩 취하여 합 12員을 두었다가 후에 6員을 減했다. 그중 二員은 三曆官이 兼帶⁶⁶⁾하고 四員은 前銜에서 任命했다. 正宗 丁未(1787)에 兼帶

56) 看山은 墓地를 보는 것.

57) 물러가며 교대로 임명되는 遞兒職

58) 자리의 차례를 적은 記錄

59) 다음에 本文에 나온다. 兼職없이 從仕하는 職責.

60) 祿이 없는 官職.

61) 揀選은 사람을 가리는 것. 課講은 王命을 받은 試驗官이 講讀을 試驗하는 것. 따라서 揀選課講之法은 人員을 가리기 위한 講讀試驗法.

62) 春秋로 祿을 받는 臧의 取才.

63) 임금의 裁可를 받음. 임금의 決裁를 받는 文書에는 啓字를 색인 木印이 찍힌다.

64) 上에게 올리는 啓本의 目錄

65) 交食을 計算하는 試驗.

66) 兼仕.

하는 자리를 없애고 그대로 前衛에 所屬시켰다. 이로부터 三曆官은 다시 交食을 照管⁶⁷⁾하지 않게 되었다.不但 釐革하는 일만 이렇게 頻繁했을 뿐 아니라 官員의 缺員을 채우는 補闕의 規則도 역시 각각 같지 않아서 혹은 試驗으로 취한다 해도 그 點數 매기는 方法이 겨우 定式化되었다가도 다시 되돌려서 罷하곤 했다. 辛亥(1791)에는 王게 啓하여 課試와 陞差⁶⁸⁾ 등의 法을 정했다.

修選官 6員—職差法⁶⁹⁾을 管掌한다. 위를 보라.

推步官 10員—七政算 內篇의 推步를 管掌한다. ○世宗朝 때 皇明大統通軌를 취하여 內篇을 만들고 또 回回 曆法을 얻어서 外篇을 만들었다. 詳細한 것은 아래의 治曆篇에 있다. 孝宗朝에 時憲曆으로 고쳐 썼다. 그래서 三曆官은 時憲法을 管掌하고 推步官은 內篇法을 管掌했다. 正宗 辛亥(1791)에 推步官을 減하고 修述官을 시켜 內篇을 兼掌케 했다.

別選官 50員—英宗 丙戌(1776)에 처음으로 天文學 30員 地理學, 命課學 各 10員을 두었다. 科學에 오른 자나 아직 못 오른 자(科未科)⁷⁰⁾를 莫論하고 각각 本業의 試講에서 略⁷¹⁾以上을 취한다. 被選人⁷²⁾은 먼저 分數⁷³⁾에 따라 다음에 職次⁷⁴⁾에 따라 缺員이 나는데로 매꾸어 補한다. ○設置한 始初에는 三曆廳의 諸堂이 달마다 考講(試講)을 實施하여 每節季마다 分數를 通計하여 成績이 優秀한 자 三人에게 差等있게 施賞을 했는데 지금은 廢했다.

前衛 無定員—三學에서 兼職이 없이 (無見帶)⁷⁵⁾從仕하는 자를 前衛이라 한다.

聰敏 14員—天文學 10員 地理學, 命課學 各 2員 各學의 僉正 以下 年齡이 四十 未滿인 자가 該廳에서 會圈하여 任命하고 일을 하게 했다. ○天文學 聰敏은 전에는 11員이었는데 正宗 辛亥(1791)에 1員을 減했다.

權知 無定員—세로 品階를 받는 자를 다같이 任命한다. 諸學이 같다.

生徒 60員—天文學 40員, 地理學, 命課學, 各 10員 各該學에서 可否를 相議해서 錄案⁷⁶⁾에 記載하게 한다.

(3)-3

訓長 2員—天文 命課學이 各各 一員씩이다. 訓副 無定員, 天文訓長은 三曆官의 春秋에 하는 課講의 始初부터 생겼다. 訓長을 겸은 자는 前縣監 安國資 뿐이었다. 그 후에 中途에서 廢했다. 正宗 辛亥(1791)에 다시 天文學首堂으로 訓長을 삼았다. 三曆官 修述官 중에서 曆理에 精通한 자를 訓副로 했다. 本學의 抄選을 試驗하는 일을 맡았다—訓副를 지낸 자는 金啓宅, 成周憲, 金泳 等數人이다. 一命課訓長은 곧 該學의 首任으로 한다. 訓課廳 중에 6員이 있다. ○本學首堂은 三曆廳 諸堂의 品秩이 높은 자가 맡게 되어 있다(例察).⁷⁷⁾ 修述官이나 別選官이나 前衛 같은 것은 堂上에 비록 資質을 갖춘 자가 적다 해도 이 例에 不在하다. 癸丑(1793)에 知中樞府事 李德星이 늙고 病들어서 提學⁷⁸⁾에게 書를 올려서 떠고 있는 任務를 풀어 주기를 빌었는데 三曆官은 交遞하기를 許諾했으나 首堂과 訓長은 그대로 맡게 했다가 三個月이 지난 뒤에 筵席에서 稟하여 (筵稟)⁷⁹⁾ 다시 그 職에 任命하였다 (還實).⁸⁰⁾

67) 남의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것. 또는 남의 일을 맡아서 處理하는 것.

68) 昇進 發令함.

69) 各職에 任命하는 法(?)

70) 科學에 合格한 자와 아직 科學에 合格하지 못한 자.

71) 考試에서 그 成績에 따라 通, 略 粗의 三階로 評價하는 方法이 있다. 그 중의 略이다.

72) 選拔된 자.

73) 成績 評價에서의 點數의 一種.

74) 官職 品階의 차례 또는 職責의 차례.

75) 現職의 兼職이 없는 것

76) 犯罪人 名簿. 여기에는 可로 決定되어 生徒가 된 자의 名簿.

77) 으레 그 일을 맡게 되어 있는 것

78) 提調.

79) 筵席에서 王게 直接 稟하는 것.

80) 辭職한 官員을 다시 官職에 任命하는 일.

3. 解 說

(1)의 緒論的인 글의 內容

이 글에는 朝鮮初에 高麗朝의 書雲觀의 制度를 그대로 본따서 天文, 地理, 曆數, 占筮, 測候, 刻漏 등의 業務를 管掌하는 書雲觀을 設置하고 判事 以下の 諸官員을 두었다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 이 記述은 朝鮮實錄 太祖 元年 壬申(1392)의 記錄과 거의 같다. 다만 書雲觀의 業務가 實錄에서는 天文, 災祥, 曆日, 推擇 등으로 되어 있어서 兩者 間의 약간의 差異를 보인다. 그러나 兩者에 包含되어 있는 占筮와 災祥이 좀 異色の이어서 이들의 記述이 朝鮮初의 書雲觀에 期待했던 時代的 興望을 反映하는 면이 있다.

다음에는 世宗朝에 禁漏의 일을 天文에서 分離하였다가 後에 中國 欽天監의 例를 따라 다시 합해서 禁漏를 天文에 合屬시켰다는 이야기만 쓰고 世祖 때에 書雲觀의 名稱을 觀象監이라고 改稱하고 다시 禁漏를 分置했다고만 썼다. 世宗에서 世祖에 이르는 사이의 많은 變化가 書雲觀에 있었고 職制 또한 成宗朝에 刊行된 經國大典의 內容으로 變遷해 갔을 것이 分明하나 그동안의 이야기가 모두 省略되어 있다. 經國大典에 記載된 內容이 이 篇의 本文 (2)에 重複되어 있기 때문에 省略하고 本論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한다. 이런 關係로 이 (1)의 內容으로는 朝鮮初의 書雲觀—觀象監의 職制의 變遷을 詳細히 追跡할 수는 없다. 朝鮮王朝實錄을 일일이 調査해야 할 것이다.

(2)의 本文의 觀象監 職制記述의 內容

本文에 該當하는 (2)의 記述은 領事に 시작하여 遞兒敎授로 끝나는 (2)-1의 部分과 司直에서 시작해서 司勇으로 끝나는 (2)-2의 部分과 三曆官에서 시작하여 生徒로 끝나는 (2)-3의 部分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3部分 各各에 補充說明이라고 생각되는 (3)의 記述이 또한 (3)-1, 2, 3의 3個部分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2)-1, 2, 3의 3部分에 添加되어 있다.

이제 (2)-1, 2, 3에 記載된 觀象監의 官職을 簡略하게 表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2)-1

領(觀象監)事	1員	領議政 正一品 兼職
(觀象監)提調	2員	從二品以上 兼職
(觀象監)堂上	無定員	堂上官 正三品以上 兼職
(觀象監)正	1員	正三品 久任 兼職
(觀象監)僉正	1員	從四品 奴婢를 管掌
(觀象監)判官	1員	從五品 褒貶을 管掌
(觀象監)主簿	1員	從六品 祭享牒呈을 管掌
(觀象監)直長	2員	從七品 1員은 祭享牒呈을 管掌
(觀象監)奉事	2員	從八品 1員은 星變牒呈을 管掌
(觀象監)副奉事	1員	正九品
(觀象監)參奉	2員	從九品

天文學教授	1員	從六品	聰敏의 考試를 管掌
地理學教授	1員	從六品*	
天文學訓導	1員	正九品	
地理學訓導	1員	正九品	
命課學訓導	1員	正九品	
(天文學)**兼教授	2員	從六品	測候星變과 聰敏의 考試를 管掌
遞兒教授	2員	天文學 1員, 命課學 1員	

註: *은 大典會通에 依한 것. **는 管掌業務에서 推測한 것.

(2)-2

司 直	1員	日月食述者가 兼함.
司 果	無定員	
司 正	3員	
司 猛	2員	
司 勇	3員	

(2)-3

三曆官	30員	星曆의 推步 담당
諫吉官	7員	良吉의 選擇 담당
修述官	6員	文食의 推步 담당
修選官	6員	職差法 담당
推步官	10員	內篇의 推步 담당
別選官	50員	天文學 30員, 地理學 10員, 命課學 10員
前 衙	無定員	
聰 敏	14員	天文學 10員, 地理學 2員, 命課學 2員
權 知	無定員	
生 徒	60員	天文學 40員, 地理學 10員, 命課學 10員

이 表에서 無定員을 除外한 나머지의 定員이 (2)-1에 23名, (2)-2에 9名, (2)-3에 183名으로 모두 합하면 215名이다. 無定員인 자리로는 (2)-1에서 堂上 (2)-2에 司果 (2)-3에 前○ 權知가 있으므로 實際의 人員은 215名보다 相當數가 더 많은 셈이 된다. 그러나 (2)-3에는 兼職이 또한 많았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書雲觀志의 (2)의 記述이 3個部分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著者에 그만한 意圖가 있었던 것으로 解釋된다. 첫째 部分인 (2)-1은 대체로 經國大典과 그의 後身인 大典會通에 記載된 觀象監의 職制와 一致한다. 이 事實은 觀象監의 核心의 官職이 이 (2)-1에 나타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 20餘名の 人員이 觀象監의 行政的業務를 擔當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2)-2의 10名前後의 軍職은 大體로 首堂에 別付되는 等 各學에 붙어서 補佐의 일을 擔當했던 자리인 것 같다.

다음의 (2)-3의 200名에 가까운 人員은 三曆官 以下 實際의 技術職으로서 觀象監에 負荷된 本來의 目的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判斷된다. 이 中에는 (2)-1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2)-3을 兼任한다.

各 官職에 붙어서 작은 活字로 달은 註에는 翻譯文에서 보는데로 品階와 兼識關係 管掌業務 印信

의 有無를 記錄하고 다시 任命의 方法 天文學, 地理學, 命課學의 三學에의 자리의 分配 등이 적혀 있다.

특히 三學을 자주 論한 것에서 觀象監의 實務가 天文學, 地理學, 命課學의 三學으로 나누어져서 遂行되었고 人事問題도 各學이 大體로 別途로 行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三學 中에서 天文學을 本學이라고도 稱한 것을 보나 人員의 配定이 큰 것으로 보나 人事權에서의 優位 등으로 보아서 天文學 쪽이 他學에 위에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三學의 任務를 살펴 보면 天文學에서는 星曆의 推步, 交食의 推步, 星變의 測候, 禁漏 等の 業務를 擔當하고 地理學에서는 風水說에 의한 擇地의 業務를 擔當하며 命課學에서는 方書에 의한 擇日等を 擔當했다. 그 內容은 뒤에 나오는 科試 取才의 篇에서 더 確實하게 알 수 있다.

이들 官職의 註를 볼 때 그 任命 昇進 轉任과 任期等이 매우 複雜하고 그 때마다의 品階의 問題도 理解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더구나 遞兪職이니 閒散職이니 때로는 無給職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이 또한 매우 判別하기 어렵다. 이 詳細한 內容은 翻譯文의 註에 比較的 仔細히 記述되어 있기는 하나 더 確實한 것은 朝鮮時代의 官吏의 人事制度의 全般的인 研究와 아울러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論文에서는 翻譯文으로서 알 수 있는 程度에서 一段落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3)의 補充文

(3)-1에서는 처음에 緒論의인 文章 (1)에 이어지는 內容으로 燕山君時에 觀象監을 縮小하여 名稱부터 司曆書로 고치는 등의 일이 있었다가 中宗朝에 다시 復舊되면서 약간의 職制의 變動이 있었음을 記述했고 그 다음에는 英宗朝로 이르러 몇번의 人事規則의 變更이 있었고 다시 正宗朝에 와서도 또 몇번의 變革이 있었음을 적었다. 그리고 이어서 英宗朝 肅宗朝에 있었던 人事規定의 變改와 이에 連關되었던 個人的인 事件을 論하였다.

(3)-2에는 天文學 習讀官이 있었다는 이야기에 大典通編의 內容의 一部를 轉載하여 또 다른 人事規定의 變化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無祿官의 存在를 본다.

(3)-3에는 訓長과 訓副의 대한 人員數와 任命方法과 李德星의 例를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補職으로서의 訓長과 訓副의 性格을 밝혔고 아울러 金啓宅, 成周憲, 金泳 등이 訓副를 겪었음을 註로 表示하고 있다.

4. 餘論—官職篇의 性格과 價値

書雲觀志가 觀象監의 全禮에 대하여 골고루 記述한 것인만큼 그 官職篇도 역시 그 어느 文獻보다도 觀象監의 職制를 詳細히 記錄하고 있다. 우리가 恒例 朝鮮時代의 官制를 살필 때 參考하는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그 어느것도 이 書雲觀志 官職篇만치 觀象監의 職制의 全貌를 밝힌 것이 없다. 더구나 各 職位의 任務, 자리數의 變動, 勤務期間, 任用方法 等等은 오직 이 官職篇에서만 볼 수 있다. 우선 그런 意味에서 이 官職篇의 價値가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勿論이 官職篇은 그 뒤에 繼續되는 薦舉, 科試, 取才의 3篇에 의하여 한층 더 明白한 理解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들 3篇의 基本이 되는 것이 또한 이 官職篇이기도 하다.

官職篇에 記錄된 職員組織을 볼 때 느껴지는 하나는 觀象監을 떠받들고 있는 迷信的 要素이다. 三學 中의 地理學이니 命課學이니는 오늘날의 눈으로 볼 때는 完全히 迷信的인 것이고 또 測候에서 重要한 項目으로서의 星變 또한 그러한 要素를 多分히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中國이나 日本의 例와 달리 領觀象監事가 領議政이 兼職하는 자리고 그 밑에 또한 他國에 類例가 없는 提調 2名과 定員의 限定이 없는 堂上官이 存在했다는 것은 世宗 世祖를 있는 君王家의 家學

이란 自矜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東洋 古來의 自然現象에 대한 迷信的 解釋의 尊重이 우리나라에서 類例없이 컸던 것인지 좀 생각하여 볼 問題임직도 하다.

또 하나 이 官職篇의 記述에 나타난 著者 成周憲의 執筆態度에 筆者는 어떤 特異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著者가 나타낸 觀象監의 官職의 자리數와 그 增減 그리고 그 選擇任用의 方法에 대한 銳敏한 反應이다. 成周憲은 雜科를 通하여 出仕했던 世稱 中人에 屬하는 사람이었다. 그 中人の 한사람인 著者의 記述에 나타난 그의 感情이 兩班들이 가졌던 官職에 대한 態度와 一脈相通하는 점이 없었을까 하는 것이다. 星湖 李瀾이 指摘한대로 一定數의 官職을 놓고 數的으로 增加하는 兩班 子弟의 所謂 就職競爭이 드디어는 四色의 黨爭을 낳았다면 역시 子孫이 늘어가는 中人들 또한 雜科 出身과 그 一族들이 앉을 수 있는 官職의 자리에 대한 興奮하기 쉬운 感情이 어찌 없었을 것인가. 그러한 雰圍氣를 이 官職篇에서 느끼는 것은 아마도 筆者 하나만은 아닐 것이다.

끝으로, 이 官職篇에 이어서 觀象監의 職員採用方法을 다룬 薦舉, 科試, 取才의 翻譯과 解說을 執筆할 것을 約束하고 이를 契機로 하루 速히 書雲觀志 全四卷이 翻譯되기를 빌며 이 글을 맺는다. (俞景老)

參考文獻

1. 趙國元 校閱, 南晚星外五人執筆, 楊麒植外 三人 編輯「古法典用語集」, 法制處, 1979.
2. 朝鮮總督府 中樞院調查課 編「校註 大典會通」, 朝鮮總督府中樞院, 1939; 保景文化社, 1987.
3. 李弘植 編著「完壁 國史大事典」, 百萬社, 1973.
4. 高麗史 百官志一
5. 經國大典註解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影印

附錄 原文

書雲觀志 官職篇